

대전신용보증재단

2021년 신용보증지원 안내

CONTENTS

- 01. 재단 및 신용보증제도 소개
- 02. 신용보증대상
- 03. 신용보증 이용절차
- 04.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상품
- 05. 신용보증거래시 유의사항

1. 재단 및 신용보증제도 소개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대전광역시,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및 연고기업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적 금융기관입니다.

설립일

1997.04.01.설립하여 1997.06.01부터 영업개시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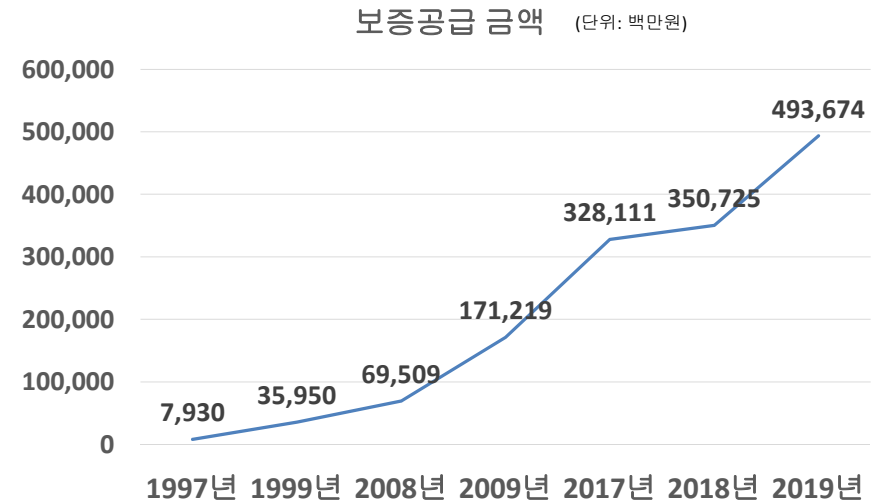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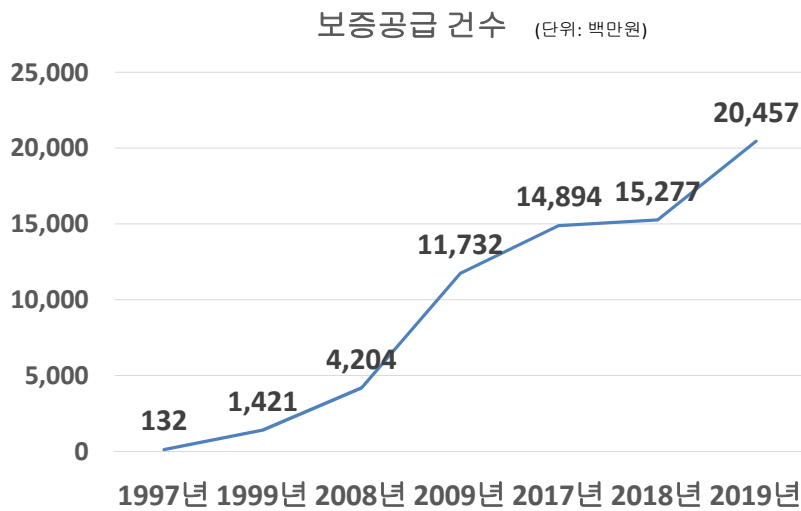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증관련 주요 연혁

- 1997. 6월 1호 보증서 발급
- 1999. 3월 보증공급 1,000개 업체
2012. 3월 50,000개 업체
- 2001. 2월 보증공급 1,000억
2012. 8월 1조원 돌파
- 2019. 12월 보증잔액 7,355억원(누적 보증공급 3조 2,223억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 공급 현황



2. 본지점위치

-본점 신용보증부-

중구 보문로 246, 5층(대흥동, 대림빌딩) : 중구

-서구센터-

서구 대덕대로 235, 3층(둔산동, 하나은행) : 서구

-동구대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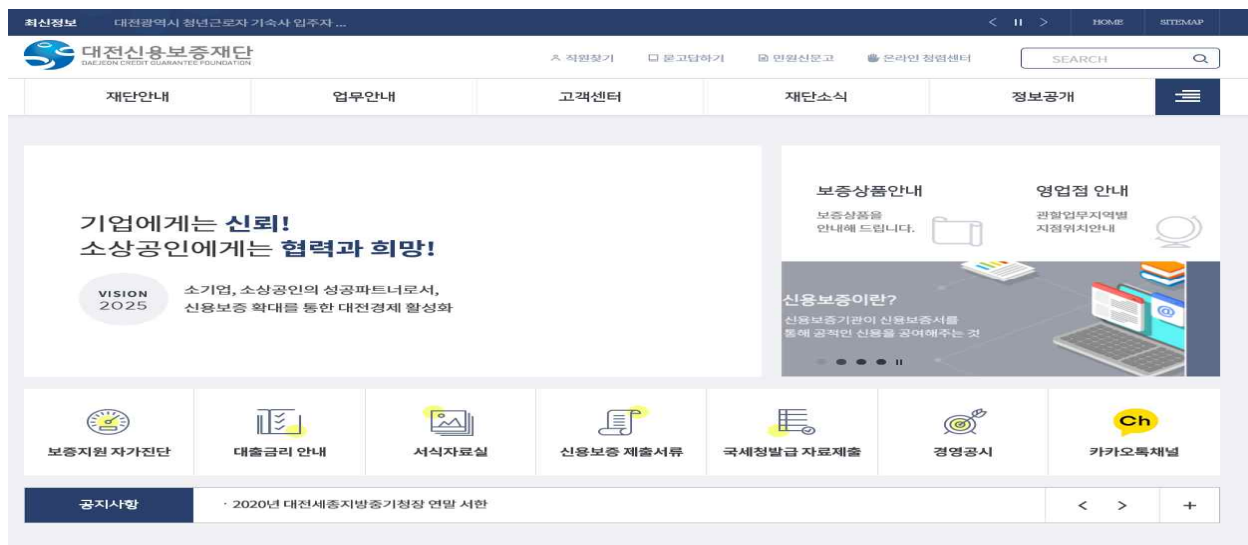
동구 동서대로 1629-6, 2층(부광빌딩) : 동구, 대덕구

-유성지점-

유성구 도안대로 591, 4층 : 유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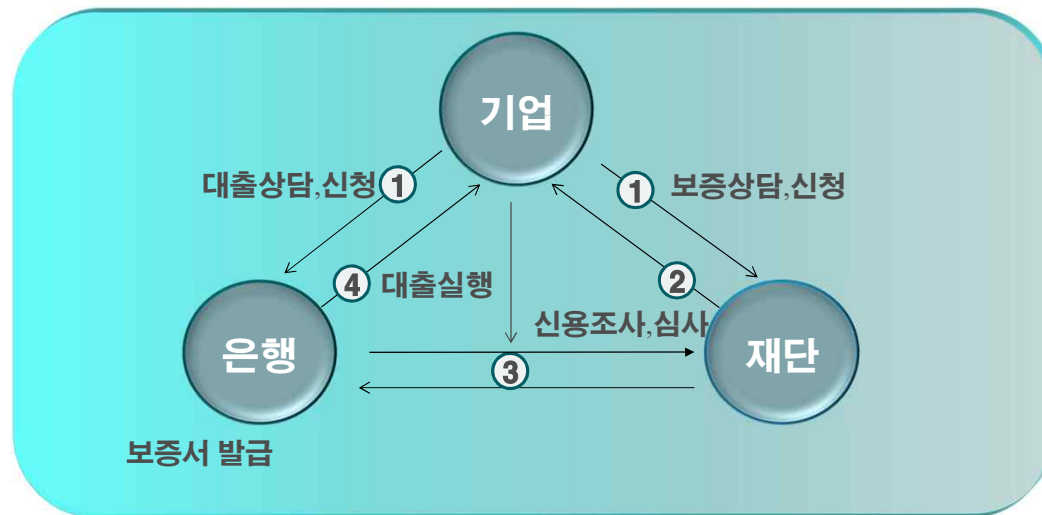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inbo.or.kr>



- 신용보증
- 보증절차 안내
 - 보증운용내용
 - 보증상품 안내
 - 편리한 보증제도
 - 보증지원 자가진단
 - 준비서류 안내 등

신용보증제도 소개



One-Stop 신용보증제도 도입

2. 신용보증대상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광업 :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대전광역시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등으로
신용보증금지기업 및 제한기업, 제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으로
신용이 양호(6등급 이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구 분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
| 신용보증대상 | 일반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기업 기술창업, 벤처기업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
| 보 증 한 도 | 동일기업당 30억 | 동일기업당 30억 | 동일기업당 최대 8억 소상공인 최대 1억원 |
| 보 증 료 | 0.5%~3% | 0.5%~3% | 0.5%~2% |



2. 신용보증대상

1. 보증금지기업

- 1) 재단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2) 위 기업의 이사 중 과점주주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3)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사업자)이 대표자인 기업 등

2. 보증제한기업

- 1) 휴업중인 기업
- 2) 금융기관에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3)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4)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5) 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절차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등재 기업
- 6) 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 사고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7)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의한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신용보증대상

3. 재보증 제한업종

- 1) 유흥 주점업
- 2)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 제외)
- 3) 골프장운영업
- 4) 무도장운영업
-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6)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7) 담배중개업
- 8)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9) 잎담배 및 담배도매업
- 10) 주류 도매업
- 11) 모피제품 도매업
- 12) 금융업
- 13) 보험 및 연금업
- 1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인,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
- 15)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16) 다단계판매업 등

3. 신용보증 이용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청

자금의 용도 및 보증제한사항 등 기업의 기초 내용을 확인

- 1) 신용보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3) 주민등록등본, 초본
-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5)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7) 임차사업장 및 임차거주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신용조사(현장실사)

재단직원 또는 은행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상황, 시설수준 외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의 사업내용 사실확인 등을 파악

3. 보증심사

기업의 신용상태 및 사업성, 경영자의 사업추진능력 및 부채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4. 보증지원 승인(전자보증서 금융기관으로 전송)

5.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4.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상품

일반보증(상시 운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내 소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NICE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 지원한도 : 총보증금액 8억원 이내(소상공인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보증부 여신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 금융기관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대출은행 책정금리
- 보증비율 : 85% 부분보증
- 보증료율 : 평가등급별 차등적용(평균 1.1% 내외)



4.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상품

소상공인 정책자금

- 상담 및 신청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864-1602, <http://www.semas.or.kr/>)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이며, NICE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원금의 70% 분할, 30% 만기일시상환)
- 보증료율 : 평가등급별 차등적용(평균 1.1%내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 상담 및 신청접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이며, NICE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 주요내용 : 2년간 이차보전(2%), 신용보증수수료 25% 지원
(특별대상지원 3%: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 대출금액 및 기간 : 6천만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4.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상품

기타 보증상품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 = 대전광역시 소기업 경영개선자금
- 서구청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 대덕구청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기타 정책적 특례보증 등



5. 신용보증거래시 유의사항



- 1) 보증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보증료(0.5%~2.0%) 납부
- 2)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휴업, 폐업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 3) 채권은행으로부터 연체 등을 사유로 보증사고통지를 받았을 때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 진행

THANK YOU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5층(본점)

www.sinbo.or.kr

붙임자료

<붙임 1> 특별지원 대상

| 특별지원대상 | 확인방법 |
|--------------------------------------|---|
| ①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19년 1월 현재 : 289개소 > |
| ② 재해피해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동사무소 및 중기청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주점업 중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 |
| ③ 여성가장 소상공인 (<u>별칭 확인</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 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 ④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⑤ 장애인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및 국가유공자장애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⑥ 다자녀가족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⑦ 다문화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제결혼가정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연자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⑧ 한부모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임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천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안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희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희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 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대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사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 64992 | 지주회사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익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경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골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설소는 장애인자금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카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중), 무도장운영업(91291)을 용지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통중점업(56211) 및 무도유통중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부동산 감정평가업(68223),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용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전문업종 중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전문업종 중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도소매업 중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소상공인 확인 서류

1. 연매출 확인서류

가. 일반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나.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 최근에 창업하여 별도 신고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최근일까지의 기타매출 자료(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대체 가능
- * 발급처 :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 민원발급기, 홈택스 등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홈택스) 중 1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 '나'에 기재된 서류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구분에 '직장가입자'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사(자격상실자) 현황이 포함된 자료 제출. 직전연도(2019년) 영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2019년 1년치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최근 1년치자료 필요(1년미만인 경우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의 자료)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등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제출시 상기 연매출 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